

| | |
|---|---|
| <p>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상 관련부문을 모두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환경상과 중복되는 환경보호부문을 삭제하며,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p>2.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p> <p>1) 자랑스러운공무원상 관련부문 등의 삭제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조례는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도 청렴근검, 친절봉사, 시정발전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200명 범위내에서 표창하고 매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왔음. <공무원 시상내역('92-'98년)> -수상인원 : 1,353명(연간 193명) -수당지급액 : 8억 12백만원(연간 1억 16백만원) ○ 공무원 관련 표창은 196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데, 시상내용중 특히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새서울봉사상」은 성실하게 일하는 부서와 직원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랑스러운공무원상에서 수여해 온 것보다 그 규모와 포상 내용면에서 보다 나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새서울봉사상 시상계획> -우수부서표창 : 연간 12개부서, 부서당 100만원씩 -공무원표창 : 연간 540명, 1인당 50만원씩 ○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공무원상 부문은 현행 공무원표창조례와 표창 및 시상금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p>2) 자랑스러운시민상중 환경보호부문의 삭제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근검절약, 환경보호 등 6개 부문에 대하여 연간 총 500명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상해 왔음. <시민상 시상내역('92-'98년)> -총인원 : 1,141명(연간 163명) -시상금 : 11억 41백만원(연간 1억 63백만원) ○ 현재의 6개부문중 환경보호부문은 '95년 | <p>하반기부터 '98년 하반기까지 총 67명에게 시상하였으나, 지난 '97년 1월 15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환경상조례에 의거 별도로 환경분야의 시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자랑스러운시민상과 사실상 중복되어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3) 기타 개정사항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개정된 부분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시장표창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수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임. ○ 이는 기간은 비록 3년이 되지 않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공적자의 사기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p>3. 결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현행 조례중 서울특별시공무원표창조례와 중복되는 공무원상 관련부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환경상과 중복되는 시민상중 환경보호부문에 대하여, 기타 표창수여기간 제한부문에 대하여 각각 삭제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시민상 수상자의 수상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는 즉시 취소하고 지급된 물건이나 금전을 치탈하는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의 종류를 보면 자랑스러운시민상을 비롯하여 문화상, 어린이 및 청소년상, 시민대상, 환경상, 건축상 등이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는 조례정비차원에서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hr/>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p> <p style="text-align: center;">검 토 의 건</p> <p>1.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는 지난 94년 10월 25일 한양천도 600년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정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긍지와 희망을 갖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제정된 조례로서, |
|---|---|

○ 기존의 관주도의 행사추진에서 민간주도의 시민자율축제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그 동안의 추진현황

- 1994년 10월 25일 조례 제3121호의 제정으로 10월 28일을 서울시민의 날로 지정한 이후
- 제1회 및 제2회 행사는 성수대교 및 삼봉백화점 붕괴사고로 기념식만 실시하였으며,
- 제3회 행사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서울시민 5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민 한마음 큰잔치」를 펼치고 각종 체육행사와 문화예술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였음.(소요예산 16억 96백만원)
- 제4회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실시하였으며,
- 제5회('98년) 행사는 각계 시민대표가 중심이 되어 「남산겨간기」등 3개분야 18개 행사를 다양하면서도 간소하게 실시하였음.(소요예산 1억 77백만원)

3. 주요개정내용 및 검토사항

-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①현행 조례 제3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시민의 날 행사종류를 삭제하고 ②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단위로 행사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토록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 그 동안의 시민의날 행사추진을 보면 관청주도로 기념식과 함께 각종 체육대회 등 대규모의 소모적 행사에 치중한 면이 있으며, 시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축제분위기 조성에는 미흡하였다고 사료되나, 지난해('98년도)의 경우에는 시민대표가 중심이 되어 행사내용과 추진방법을 선정하고 시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실시하였음.

'98.10.27, 29

시민여론조사결과(공보관실)

- 행사의 민간주도 운영이 좋다 : 75.4%
- 행사주체를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지원하는 것이 좋다 : 81.9%

○ 행사기간 역시 10월 28일 당일의 소비지향적인 일과성 행사보다는 주간 또는 월간으로 기간을 정하여 600년 서울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첨단 현대과학을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이 함께 지속적으로 만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 : 광주비엔날레, 부산 국제영화제, 도쿄 불꽃축제)

○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정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가칭 시민의날추진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제도적으로 상설화(조례에 포함)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
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를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시민과 공무원”을 “시민”으로 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및 자랑스런 공무원상(이하 “공무원상”이라 한다)”을 “자랑스러운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대상) 시민상의 수상대상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에 한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민상은 연간 500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제2항중 “상금이나 수당”을 “상금”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시민상 및 공무원상”을 “시민상”으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서울특별시 내